

전주지방법원 2018. 5. 9 선고 2017가단2885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티에스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4. 18.

판결 선고2018. 5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전주시 덕진구 B 공장용지 5,541㎡ 중 별지 도면1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8㎡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층 2층건 사무실을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전주시 덕진구 C 공장용지 840㎡ 중 별지 도면2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4㎡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층 2층건사무실을 철거하고, 위 (나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D 지상에 있는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층 2층건사무실 건평 1층 47㎡, 2층 40㎡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8㎡(별지 도면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(ㄱ)과 같다)는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B 공장용지 5,541㎡를,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2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4㎡(별지 도면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(ㄴ)과 같다)는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공장용지 840㎡를 각 침범하여 그 지상에 세워져 있다.

[인정근거] 갑 2, 3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공장용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B 공장용지 5,541㎡ 중 별지 도면1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38㎡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층 2층건사무실을 철거하고 위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 ② 전주시 덕진구 C 공장용지 840㎡ 중 별지 도면2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4㎡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층 2층건사무실을 철거하고 위(나)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, 전 토지 소유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

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유진

별지